Mission 02

해외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체계 분석

옥외광고물은 눈에 띄는 홍보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안전 문제에 노출될 경우 대형 사고를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 옥외광고물 관련해 깐깐한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미션2에서는 해외 주요 나라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해본다. 이를 통해 옥외광고물 설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기존 설치된 옥외광고물의 유지보수 실패에서 비롯되는 안전사고,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등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포인트와 함께 이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나라별로 어떤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Analysis of OOH safety management system in foreign country

독일 _ 건축규정과 동일한 법적 제재 아래 사후관리에 대한 규제와 활동은 부족 **장성준** 해외통신원

미국 _ 국가적 노력과 지자체의 구체화가 빚어낸 미국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시스템 **강인영** 해외통신원

일본 _ 점검 기준과 방법 제시에 비해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실시는 미흡 **박미경** 해외통신원

중국 _ 대형 옥외광고물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강화 **이지행** 해외통신원

캐나다 _ 공공안전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 투입 **조현도** 해외통신원

프랑스 _ 지자체와 공권력의 합리적인 배치로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최현아** 해외통신원

건축규정과 동일한 법적 제재 아래 사후관리에 대한 규제와 활동은 부족

독일

Germany

독일에서 옥외광고물은 별도의 기준 없이 건축규정과 동일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따라서 안전성증명 또한 비교적 간소한 행정절차를 거친다. 물론 안전성증명서 발급이 곧 사후에 발생할 법적 문제를 책임진다는 의미이므로 허위발급이나 약식발급이 상대적으로 예방된다. 또, 옥외광고구조물 설치를 맡은 건축업자가 기본적으로 구조물의 보수와 보완 개조를 담당해야 한다는 계약상의 의무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등과 같은 특수상황을 포함해 사후관리에 관한 규제나 활동이 턱없이 부족한 건 자명한 사실이다.

* 글 _ **장성준** 해외통신원(라이프치히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

Ⅰ. 서론

독일에서 운영되는 옥외광고구조물(Werbeanlage)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옥외광고대행사가 시(Stadt)나 행정자치구(Bezirk)와 협약을 맺어 구조물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다수 큰 도시들에서 채택하고 있다. 둘째는 옥외광고 허가지역 내 건물주나 사업자들이 자신의 사유지에 광고를 위해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건축설계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건축을 실시하게 된다. 셋째는 특별허가지역(주로 시내중심이나 상점밀접지역)에 위치한 소매상이나 음식점들의 생활형 옥외광고들로 간판과 진열장, 쇼 윈도우 등이 해당하는 사례다. 이상의 옥외광고구조물들은 하나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 일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건축지역과 설치방식은 설치지역의 경관과 분위기를 고려하여 특수한 사례인 생활형 옥외광고를 제외한 관할지역의 허가(Gemehmigung)를 받아야만 집행 가능하다.

옥외광고구조물은 주정부의 건축법(Bauordnung)에 따라 그 유형과 성격이 규정된다. 튀링겐(Thüringen) 주 건축법 §10인 '옥외광고와 자동판매기 시설(Anlagen der Außenwerbung und Warenautomaten)'의 (1)에 따르면 '옥외광고(광고구조물)는 통지, 선전, 상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직업을 표식하거나 선전하는 고정시설로서 공공교통지역에서 노출되는 것들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그림과 표식, 채색, 조명광고, 진열장과 같은 상품문구 표식지역, 시트지 표식 또는 조명기둥, 평면과 보드 등이 포함됨'으로 정의된다. 옥외광고구조물은 (2)에 따라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규정을 받게 되는데, 이는 '건축시설이 아닌 광고구조물의 경우 건물의 구조나 거리의 외관, 마을의 모습 또는 경관을 어지럽히거나 교통안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건축법에 포함되는 옥외광고구조물의 대상은 튀링겐 주 건축법 §10의 (6)에 따라 승인받은 기둥이나 평면, 보드를 이용한 방식이나 가판대(신문/잡지판매대 등)에서 노출되는 광고자료, 쇼 윈도우 및 선거광고 등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앞서 분류한 세 가지 옥외광고 집행방식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유지에 광고를 위해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에만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튀링겐뿐만 아니라 16개 주의 건축법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발견된다는 특징이 있다.

Ⅱ. 옥외광고구조물 승인을 위한 절차

옥외광고구조물 설치를 승인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의 종류나 유형도 지역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의 아른스베르크(Arnsberg)는 '공공장소에서의 광고(Werbung im öffentlichen Raum)'라는 규칙을 통해 지역단체, 상업행위자, 공공기관 및 이익단체들은 포스터와 배너를 이용한 광고매체를 통해 사업의 내용을 홍보할 기회를 가져야 하지만 주민들의 편의와 공공도로의 목적보존, 환경보호 등을 위해서 광고구조물에 대한 승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른스베르크의 경우 옥외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광고 집행단체 담당자의 이름과 광고목적, 이벤트의 내용, 광고매체 수 및 설치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규정에 관해서는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 Württemberg) 주의 하이델베르크(Heidelberg)에서는 옥외광고구조물 또는 옥외광고 집행을 위한 필요성을 아른스베르크와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승인을 위한 서류에서는 '옥외광고시설의 건축도면

(Bauzeichnung Werbeanlage)'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슈투트가르트(Stuttgart) 시는 옥외광고구조물을 승인받기 위한 서류로 신청서(Antragsformular)와 건축도면, 위치사진(Standortfotos), 건축물기술서(Baubeschreibung) 등 네 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첫째, 신청서에는 옥외광고구조물을 설치하고자 지역의 구상도를 1:500의 축척(큰 축척은 1:1000)으로 제시해야 하며, 인근 토지의 운영계획을 함께 명시해야만 한다. 필수 기술내용으로는 부동산의 위치, 토지경계, 지역의 기존건축물, 광고시스템의 정확한 위치, 시공할 옥외광고구조물의 설립계획과 크기, 옥외광고구조물과 공공도로까지의 거리, (해당되는 경우) 문화재 및 보호기념물/자연보호/경관보전지역 등의 관계 등이다. 둘째로 건축도면에선 1:100 또는 1:200의 비율을 사용하여 옥외광고구조물이 설치되기 이전의 전체 전망도, 광고구조물의 높이와 너비, 깊이에 관한 정보, 광고구조물의 외관 설명 및 광고구조물의 운영 예시 등을 포함해야 한다. 셋째, 위치사진과 관련한 규정에 따르면 광고구조물이 집행될 지역의 현재 모습을 보정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 자료는 건축도면을 대체할 수도 있다. 슈투트가르트 시에서 요구하는 옥외광고구조물 승인을 위한 네 번째 서류인 건축물기술서는 지역과 크기, 교통표지, 옥외광고구조물의 유형, 색상, 조명, 현장계획 및 건축도면 등에 관해 위의 서류에서 설명되어 있지 않은 구체적인 자료들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옥외광고구조물을 설치하는 업체와 설치비용 명시가 필수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규정의 차이는 옥외광고구조물의 승인이 이를 집행하는 행정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일임되어 있는 데서 비롯된다.

Ⅲ. 옥외광고구조물 안전성증명서 소개

독일에서 옥외광고구조물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옥외광고구조물의 '안전성증명서(Erklärung zum Standsicherheitsnachweis)'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지자체에 따라 필수로 제출해야 하거나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로 나뉜다. 건축물의 안전성증명서에 대한 일반규정은 독일연방의 '건축계획과 건축검토, 감시에 관한 지시(Anordnung über Bauvorlagen, bautechnische Prüfungen und Überwachung)'의 §5 '안전성증명서 및 기타 구조적 증명(Standsicherheitsnachweis und andere bautechnische Nachweise)'에서 발견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안전성 점검을 위하여 전체 시스템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결과로 만들어질 건축물에 관한 설계도면 및 안전성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위치에 관한 정보도 함께 일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은 지면의 특성과 토지 하중력을 명시해야 하는데, 만약 직접적인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계산방식 사용이 가능하며, 만약 구조설비에 대한 구성요소나 계획이 명확하게 입증된 상태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들에 적용된 특수기술에 대한 설명은 제외해도 된다(2). 안전성증명을 위해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로는 §5의 (3)에 따라 건축자재의 발연성, 내구성시험을 위해 도면과 적용기술, 재난예방 산출근거 및 전문가 평가서가 있으며, (4)에 의거하여 방음 및 단열시험을 위한 도면과 산출방식, 전문가평가서는 필요할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다.

이처럼 안전성증명서는 일종의 건축물 감리보고서로서 일정한 경력을 갖고 있는 건축엔지니어의 검토로 발급되는데, 바덴-뷔르템베르크의 경우 5년 이상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안전성증명서에는 시행령(Verfahrensverordnung zur Landesbauordnung) §9에 따라 건축자재의 하중과 발연성, 방음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1), 건축승인을 요청한 초기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필수조건이 수반된다(2). 지면에 대한 하중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검사에 측정된 하층토의 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다른 구조물이나 이웃한 건물뿐만 아니라 성토와 하층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2). 방음에 대한 검토 결과 역시 주변 환경과 구조물의 구성적 특성을 반영한 측정결과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설계를 보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안전성증명서의 경우 복잡한 기준과 승인원칙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와 유형에 따라 면제 또는 간소절차를 거치는 사례가 있다.

옥외광고구조물의 건설허가에서 안전성증명서는 건축허가간편성의 대상으로 여겨져 간소화된 승인절차를 거치는 사례들이 많다. 예를 들어 바덴-뷔르템베르크의 §52 '승인간소화(Vereinfachtes Baugenehmigungsverfahren)'의 (1)에 따르면 옥외광고구조물은 일반건축물과 다른 구조물(§51의 3)이라는 특성과 (4)에서 명시한 건축물 관리 관청에 의해 검토된 공법을 사용할 경우(§58의 (1))엔 승인간소화 대상으로 분류된다. 승인간소화 대상으로 분류된 옥외광고구조물일 경우에도 법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사용되는 공법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되어 있다. 옥외광고구조물의 안전성증명서 발급은 주변경관과 도시의 조화, 특수이용토지규정 등과 같은 지역의 옥외광고규정에 부합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제3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려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도시들에서 사용되는 옥외광고구조물의 안전성증명

서의 서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도시들의 안전성확인서 예**

안전성확인서(Erklärung zum Standsicherheitsnachweis) (§10의. 2 LBOVVO)

LBOVVO의 §18에 따라 건축검사제외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건축물 구조 승인간소화 대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LBOVVO §2 1의 (5)에 따른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건축업자(Bauherr): 이름, 회사, 주소, 연락처
2. 건축지역(Baugrundstück): 커뮤니티, 지구, 도로, 주소
3. 시공계획(Bauvorhaben): 1) 신축, 2) 변경, 3) 용도변경.
   시공계획의 정확한 지칭, 결정근거 추가서술
4. 구조증명서작성자(Verfasser der bautechnischen Nachweise): 이름, 회사, 주소, 연락처
   "구조증명서작성사는 건축업자에게 안전성인증서를 위탁받았음."
   건축업자의 위탁서명.
5. 확인(Bestätigung)
   5.1. 나는 해당 시공계획의 안전성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한다.
   5.2. 나는 LBOVVO §18의 건축물 승인간소화 대상의 안전성인증을 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 LBOVVO §18의 3의 (1)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건축구조물 공학 분야의 전문경력이 있는 토목기술자임을 확인한다.
   ⊙ LBOVVO §18의 3의 (2)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안전성 관련 활동을 행했음을 당국이 확인했다.

   서류작성자 서명.

한편, 위에서 소개한 옥외광고구조물의 유형은 옥외광고대행사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닌 특별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옥외광고구조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일반사항에 적용되는 옥외광고구조물의 경우 건축물의 이용목적과 건축방식, 건축자재 등의 기준에 따라 일반건설승인(Allgemeine bauaufsichtliche Zulassung), 일반건물검사인증(Allgemeines bauaufsichtliches Prüfzeugnis), 추가 건물유용성증명검사(Nachweis der Verwendbarkeit von

Bauprodukten im Einzelfall), 건축양식(Bauarten), 적합성평가(Übereinstimmungsnachweis), 생산자적합성평가(Übereinstimmungserklärung der Herstellerin oder des Herstellers), 준수증명서(Übereinstimmungszertifikat)의 기준으로 별도의 검사를 받게 된다. 옥외광고구조물은 '일반건설승인'에 해당하는데, 이 사례는 작센-안할트(Sachen-Anhalt) 주의 건축규정에서 발견된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일반 건축물로 분류된 경우 '독일건축기술연구소(Das Deutsche Institut für Bautechnik)'의 유용성 입증을 통해 승인을 받게 되며(1), 전문가의 감독 하에 신청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2). 또한 독일건축기술연구소는 건축물의 검사를 위한 시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3), 승인이 된 후 취소와 연장(최대 5년까지)이 가능하다(4). 검사 결과는 독일건축기술연구소에서 공개해야 하며(6), 제3자의 재산침해가 없을 경우에만 승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5)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Ⅳ. 결론

독일에서 옥외광고구조물은 다른 구조물과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건축물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건축규정과 동일하게 법적 제재를 받는다. 안전성증명제도 역시 그 일환으로서 해석 가능한데, 승인절차간소화는 옥외광고구조물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옥외광고구조물의 설치 주체와 크기 및 운영방식에 따라서 안전성 증명을 간소화 또는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적용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은 행정효율성을 추구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독일의 행정절차가 가능한 것은 모든 행정절차에 있어서 제출한 서류의 책임자가 법적책임을 져야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안전성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단순 행정절차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발생할 법적인 문제를 함께 져야 한다는 문제로 해석되기 때문에 허위발급이나 약식발급이 상대적으로 예방된다. 또한 옥외광고구조물을 설치하는 건축업자 측에서 기본적으로 구조물의 보수와 보완, 개조를 담당해야 한다는 계약상의 의무들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구조물을 승인하는 수준에서만 절차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관한 규제나 활동이 부족하다는 것은 한계로 보인다.

특히 자연재해 등과 같은 특수상황에서 발생하는 옥외광고구조물의 수리, 보수에 대한 법적 의무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옥외광고 운영과 관련한 규제들에선 옥외

광고단체를 제외한 사례들에서 보수 규정이 부재하고, 관련 논의도 진행된 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nordnung über Bauvorlagen, bautechnische Prüfungen und Überwachung 〈https://www.gesetze-im-internet.de/baup_ano/index.html#DDNR014000990BJNE000700307〉.

* Arnsberg: Werbung im öffentlichen Raum 〈https://www.arnsberg.de/buerger/produkte/buergerdienste/sicherheit-ordnung/Werbung_im_oeffentlichen_Raum.php〉.

* Bauordnung des Landes Sachsen-Anhalt(BauO LSA)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0. September 2013 〈http://www.landesrecht.sachsen-anhalt.de/jportal/;jsessionid=7660CAD64A4C3C163C0AD68AAA5DC4B0.jp24?quelle=jlink&query=BauO+ST&psml=bssahprod.psml&max=true&aiz=true#jlr-BauOST2013V2P18〉.

* Heidelberg: Anleitung für den Dokumenten-Uploader 〈https://www.heidelberg.de/site/Heidelberg_ROOT/get/documents_E20534345/heidelberg/Objektdatenbank/63/PDF/Bau-Online/63_dokumenten_uploader_dokumentation.pdf〉.

* Landesbau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http://www.landesrecht-bw.de/jportal/portal/t/qeh/page/bsbawueprod.psml/action/portlets.jw.MainAction?p1=0&eventSubmit_doNavigate=searchInSubtreeTOC&showdoccase=1&doc.hl=0&doc.id=jlr-BauOBW2010rahmen&doc.part=R&toc.poskey=#focuspoint〉.

* Thüringer Bauordnung (ThürBO) 〈http://landesrecht.thueringen.de/jportal/portal/t/mpm/page/bsthueprod.psml/action/portlets.jw.MainAction?p1=0&eventSubmit_doNavigate=searchInSubtreeTOC&showdoccase=1&doc.hl=0&doc.id=jlr-BauOTH2014rahmen&doc.part=R&toc.poskey=#focuspoint〉.

* Verordnung der Landesregierung, des Wirtschaftsministeriums und des Umweltministeriums über das baurechtliche Verfahren (Verfahrensverordnung zur Landesbauordnung – LBOVVO) 〈http://www.landesrecht-bw.de/jportal/portal/t/qmm/page/bsbawueprod.psml/action/portlets.jw.MainAction?p1=0&eventSubmit_doNavigate=searchInSubtreeTOC&showdoccase=1&doc.hl=0&doc.id=jlr-BauRVfVBWrahmen&doc.part=R&toc.poskey=#focuspoint〉.

국가적 노력과 지자체의 구체화가 빚어낸 미국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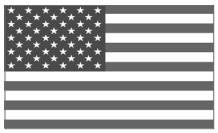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옥외광고물 관련 안전관리시스템에는 몇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옥외광고물의 설계 및 설치 기준을 통해 사전 안전성을 담보하는 미국 국제건축법이 미국 전역에서 통합적으로 활용된다는 점,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으며, 각 주별로 법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돕고 있다는 점 등이다. 그중에서도 뉴욕 시의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은 이러한 체계를 통해 옥외광고물이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국내 통합적인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체계 수립 시 본보기로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이유다.

* 글 _ **강인영** 미국 해외통신원

Ⅰ. 서론

강풍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외력을 견디지 못하거나, 부주의한 관리로 인한 안전성 저하로 옥외광고물이 추락 또는 파손되는 경우 옥외광고물은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주는 재앙이 되고 만다. 때문에 정밀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사전 옥외광고물 제작 및 시공과정은 물론,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 계획을 마련해 옥외광고물을 관리해야 한다. 이처럼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가 각별히 중요한 만큼 미국은 국가 차원의 옥외광고물 관리 제안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옥외광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설계 및 제작, 시공, 유지 및 보수의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시스템 및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관련법 및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지자체 조례를 중심으로 설계 및 제작, 시공, 유지 관리의 각 단계별 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뉴욕 시의 옥

외광고물 안전관리시스템과 구체적인 안전관리 사례를 짚어봄으로써 향후 우리 정부가 옥외광고물 안전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미국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체계 및 제도

옥외광고물의 안전한 관리가 중요한 만큼 미국 연방법인 고속도로미화법에서는 옥외광고물과 관련해 모든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에서 보이는 통행로에서 660피트 이내의 거리에 있는 옥외광고 표지판, 전시물 및 장치에 대해 교통부 장관이 공표한 국가 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유지 및 보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은 미국 국제규정위원회(ICC)에서 설정하고 있다.

1. 미국의 옥외광고물 관련 국제 건축법

미국의 국제규정위원회는 미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 및 구조물의 기본 안전 규정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건축법(International Building Code, IBC)을 3년에 한 번씩 공표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건축법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건물 및 구조물의 보건 및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1997년 고안되었으며, 현재 아부다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20세기 초반 미국의 건축규제시스템은 지역에 따라 3가지 건축 규정을 기반으로 했지만 1994년 지역 제한이 없는 규정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3년간의 협의를 거쳐 국제건축법이 완성되었다.

2015년 발표된 미국 국제건축법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본 조항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및 구조물의 지지구조, 지지대, 고정물 등은 수리 및 적절한 보존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조명이 없는 채색된 옥외광고물, 자산의 매매 또는 임대를 알리는 임시 표지판, 교통 당국에 의해 세워진 간판, 2.6평방피트를 넘지 않는 돌출형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허가 요건에서 면제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본 안전 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한 강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국제 건축법은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의 위치 규정

도 명시하고 있다. 옥외광고물은 화재 시 탈출 비상구로 사용되는 창문이나 문 또는 입구를 막도록 세워지거나 유지되어서는 안 되며 환기에 필요한 개구부에 설치되어서도 안 된다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건축법은 옥외광고물이 옥외광고물의 재료, 각각의 하중(눈, 비, 지진, 바람 등) 및 변형력 등에 대한 구조적 설계 조항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건축법에서는 모든 건물 또는 구조물의 풍하중을 알루미늄, 철강, 콘크리트 등 각 재료와 해당 옥외광고구조물의 높이, 위험 범주 건물 및 구조물 등급(4등급으로 구분)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험 범주 등급은 해당 건물 및 구조물의 위험 정도에 따라 설정되었으며, 1등급은 일반인들의 생활에 위험 요소가 적은 농업 관련 시설 및 일반 저장창고 등, 3등급은 교육시설 등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4등급은 경찰서와 발전소 등 필수 생활 시설, 2등급은 그 이외의 시설물 등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국제건축법의 건물 및 구조물 설계 관련 조항은 건물 및 구조물의 최종 풍하중을 정하는 데 있어 각 지역의 지리적 여건 및 바람세기와 위험 범주 건물의 등급에 따른 극한강도설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산악지형이나 협곡 등 특수하게 바람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경우 비정상적인 바람 조건을 조사해 건물 및 구조물의 최종 설계 풍하중을 결정하고, 현지 조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풍하중 규정은 옥외광고물 및 구조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림 1 미국의 국제건축법에서 설정하는 위험범주 등급과 건물설계를 위해 반영해야하는 극한강도 바람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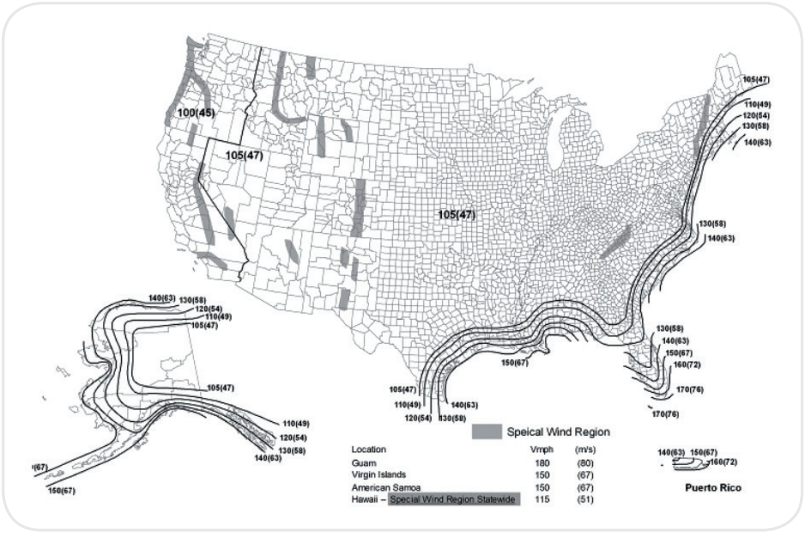

※ 위 : 위험 범주 1등급 건물 및 구조물 설계를 위해 반영해야 할 극한강도 바람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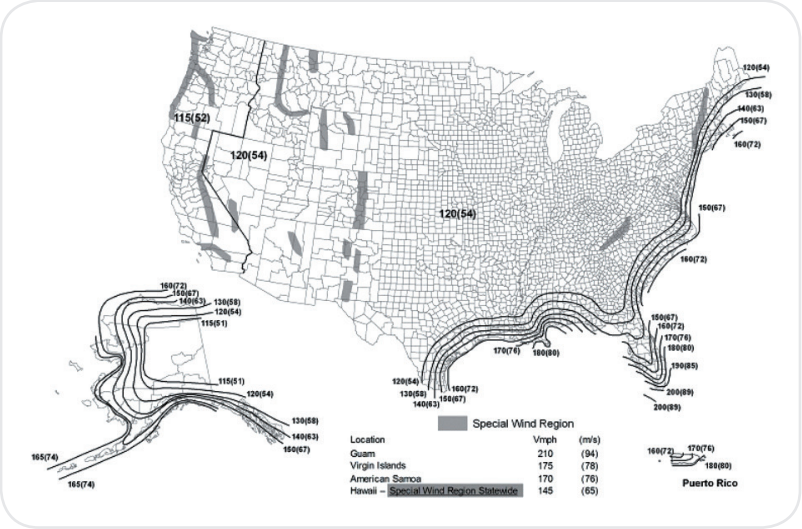

※ 아래 : 위험 범주 3, 4등급 건물 및 구조물 설계를 위해 반영해야 할 극한강도 바람세기

[그림 1] 미국의 국제건축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위험 범주 등급과 건물 설계를 위해 반영해야 하는 극한 강도 바람세기(위와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위험 범주 3, 4등급의 건물(아래) 및 구조물이 위험 범주 1등급의 건물(위)에 비해 더 높은 풍하중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바람세기는 수십 년간의 축적된 통계를 활용해 설정되었다.)

※ 출처: https://codes.iccsafe.org/public/document/IBC2015/chapter-16-structural-design

미국의 국제건축법은 또 옥외광고물의 허가를 받고 보수 및 유지해야 하는 개인이나 회사의 명칭은 물론 허가번호 등을 옥외광고물에 기재해 안전하게 옥외광고물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건축법은 지붕 간판, 벽 간판, 돌출 간판 등 옥외광고물 종류에 따라 재질 및 높이, 지지구조물 제한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돌출 간판의 경우 바람이나 타 하중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만큼 집중적인 수직 하중 및 예상되는 추가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2. 미국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관련 조례

미국의 국제건축법에서 밝히고 있듯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관련 규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종류별 옥외광고물에 따른 옥외광고물 신청 및 단계별 안전관리정책을 펼치고 있다.

1)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시공 관련 조례

먼저 옥외광고물의 허가와 관련한 안전관리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텍사스 주 캠프너 시의 경우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통해 간판의 붕괴, 바람, 화재, 충돌, 부식, 폐기 등으로 인한 인적 물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캠프너 시의 조례는 허가 단계에서부터 텍사스 주에 등록된 전문 기술자나 허가된 건축가가 옥외광고물 준비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의 설치 방법, 건물 또는 지면에 부착되는 크기, 옥외광고물 유형, 높이, 건축 자재 및 당국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보여주는 계획 및 옥외광고물 규격에 대한 청사진이나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건물이나 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되고 금속 또는 기타 불연속 물질로 만들어진 6평방피트 미만의 부착된 간판이나, 지지 구조물로부터 18인치 이상 돌출되지 않은 간판의 경우 그 견고함에 대해 토목 기술자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그 외의 옥외광고물의 경우 모두 토목 기술자의 인증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전 안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각 조례는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 설치 시 옥외광고물에 작용되는 바람이나 자체 무게와 같은 외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텍사스 주의 캐롤톤 시는 옥외광고물 관리 규정의 안전 및 건축 조례를 통해 모든 간판은 평방피트당 30파운드 이상의 풍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하며, 현행 건축법규에 따른 고정하중을 수용하도록 건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국제건축법 등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설계 및 설치 시 풍압 기준 등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위스콘신 주 저먼타운의 모든 옥외광고물이 평방피트당 40파운드 이하의 풍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

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각 지자체는 옥외광고물 설치 시 건축 조례에 부합해 풍압과 고정하중에 적합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옥외광고물의 초기 단계부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2) 옥외광고물 종류별 안전관리 조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국의 국제건물법규는 옥외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크기, 재질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을 밝히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이와 같은 국제건물법규 규정을 차용해 이를 준수하거나 각 지자체에 맞게 변형해 조례를 만들고 옥외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의 설치 높이와 형태에 따라 바람 및 각종 하중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가로로 된 벽면 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으로 나누어 최대 설치 높이와 크기 등에 대한 규정을 두는 한편, 모든 옥외광고물에 대해 높은 옥외광고물 하중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텍사스 주 캐롤톤 시의 경우 20피트 이하의 지주 이용 간판은 석판형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높이가 20피트를 초과할 경우 폴 형태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한 개수 및 예외 규정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 예외 간판을 제외하고는 모든 간판이 평방피트당 30파운드 이상의 풍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바람에 취약한 샌드위치 보드를 아예 조례를 통해 허가하지 않는 등 지자체 여건에 맞는 옥외광고물 종류별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3) 옥외광고물 유지 보수 및 제거 관련 조례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유지 보수 및 제거' 규정을 통해 모든 옥외광고물이 안전한 구조적 상태로 유지되도록 법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캠프너 시 해당 규정에서는 코팅 또는 내구성 있는 재료로 제작되지 않는 한, 모든 옥외광고물 외장 부품에 도장을 하고 좋은 상태와 외관을 유지하거나 수리 및 제거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경범죄의 판결(2천 달러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했다.

캠프너 시는 또 간판 검사 규정을 마련해 허가된 간판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간판 설치자가 해당 건축 당국에 고지해 옥외광고물이 허가사항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축 당국은 해당 옥외광고물이 제거 또는 수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매년 또는 필요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옥외광고물을 절차에 따라 제거하는 규정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위 사례와 같이 조금씩 다른 예외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각 지자체는 조례나 관련법을 통해 모든 옥외광고물이 적용 가능한 주법 및 조례, 시의 건축 규정을 준수해 설치되고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옥외광고물의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옥외광고물이 존치되는 동안 사후 안전성을 담보해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3.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시스템 – 뉴욕 시 사례 중심으로

이처럼 미국의 각 주와 지자체는 옥외광고물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이 사전에 안전하게 설치되고 유지 및 보수되도록 구체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다음으로 뉴욕 시의 사례를 통해 미국의 옥외광고물이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뉴욕 시의 간판 설치자 규정

뉴욕 시에서는 2017년 10월 16일부터 페인트로 채색하는 옥외광고물이나 6평방피트 미만의 조명이 없는 옥외광고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해 시 건축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조명이 활용되는 간판, 야립 광고, 대형 차양 간판의 경우 매년 갱신해야 하는 추가적인 조명 간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 시의 경우, 시 건축국에서 면허를 보유한 간판 설치자(Sign Hanger)의 지시 및 감독 하에 간판을 시공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이 사전 단계부터 안전하게 설치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뉴욕 시 건축국에서는 간판 설치자를 마스터 간판 설치자(Master Sign Hangers)와 특별 간판 설치자(Special Sign Hangers) 두 가지로 분류해 면허시험을 통해

간판 설치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뉴욕 시 행정법(Section 28-415.3)에 따르면 마스터 간판 설치자(Master Sign Hangers)는 무게에 관계없이 건물 외벽에 간판을 걸거나 내리고 탈 · 장착할 수 있으며, 특별 간판 설치자(Special Sign Hangers)는 정면 150평방피트 또는 12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간판을 걸거나 내리고 탈 · 장착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의 정면 면적이 75평방피트를 초과하지 않거나 25파운드(11kg)를 초과하지 않는 옥외광고물은 간판 설치자 규정에서 예외를 두도록 했다.

2) 공공 포털시스템을 활용한 뉴욕 시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뉴욕 시 건설국은 공공포털 사이트(NYC DOB NOW portal)를 통해 옥외광고물 설치는 물론 안전관리 및 점검을 위한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민원 요청 등을 용이하도록 했다. 해당 공공 포털 사이트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옥외광고물을 비롯해 전기시설, 배관시설 등 시 건설국의 허가가 필요한 시설물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그림 2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한 뉴욕 시 건축국 공공 포털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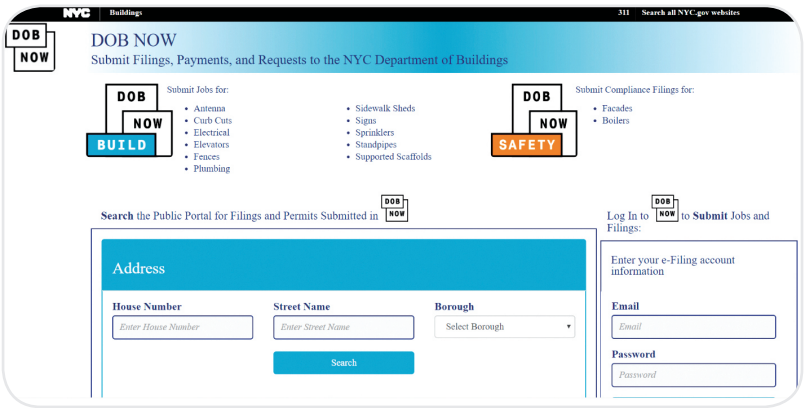

※ 출처 : https://a810-dobnow.nyc.gov/publish/#/

옥외광고물 설치 단계에서 자격을 갖춘 간판 설치자, 옥외광고물 설계자, 옥외광고물 소유주, 계약자 등 관련 당사자들이 'DOB NOW-설치(Build)'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서류 및 수수료 등을 제출하면 허가 신청서 검증 및 진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건축국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허가 및 재허가 과정을 상호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도

록 한 것이다. 'DOB NOW-설치' 공공 포털을 통한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및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뉴욕 시는 옥외광고물 소유주와 설계자, 점검자 등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의 공공 포털 이용을 돕고 있다. 설치 진행 과정에서 현장 안전 프로그램의 진행 및 뉴욕 시 건설국의 안전조사단계 과정도 'DOB 공공 포털'을 통해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하다.

'DOB NOW' 공공 포털은 'DOB NOW-설치(Build)'와 함께 'DOB NOW-점검(inspection)', 'DOB NOW-안전(Safety)', 'DOB NOW-면허(Licensing)'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옥외광고물의 경우 'DOB NOW-설치'와 'DOB NOW-점검' 포털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안전점검 관련 관리를 할 수 있다. '점검' 포털에서는 옥외광고물 점검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물론 옥외광고물 점검 결과를 추적하고 통지해주며, 점검 시행과 개발 정보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옥외광고물 면허 발급자들에 대한 온라인 시험 접수와 면허 발급 및 갱신 서비스를 제공할 'DOB NOW-면허' 포털은 현재 준비 중에 있다.

이와 같이 뉴욕 시는 공공 포털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허가, 안전한 보수와 유지를 위한 점검까지 상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단계적인 진행을 통해 사전 및 사후 안전성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4.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 마련과 각 주와 지자체의 법적, 정책적 노력에 더해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각 주와 지자체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1)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안전 조례 관련 보완 노력

지난 6월 초 펜실베이니아 주 루체른 카운티의 윌크스 바레 타운십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 EF2(200mph 이상의 바람세기를 동반함)의 토네이도가 몰아닥치면서 건물 및 옥외광고물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펜실베이

니아 주에서는 건물 및 구조물 설치에 있어 국제 건축법상 풍하중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루체른 카운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풍하중 요건은 90mph이다. 그러나 불어 닥친 바람은 130mph를 넘어섰고, 해당 지역의 건물 및 구조물은 법적인 풍하중 요건을 충족해 설계 및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물 및 옥외광고물 등은 예상치 못한 토네이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붕괴되었다. 잦은 태풍의 영향을 받는 미 동부 연안의 경우 건물 및 구조물 설치 시 풍하중이 140mph, 괌은 170mph, 플로리다 남부는 150mph 등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지만, 워싱턴 주나 캘리포니아 주 일부에서는 풍하중이 85mph의 낮은 기준으로 설정된 지역도 있어 평균적인 기상데이터에서 벗어나는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건물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한 풍하중 규정이 모든 위험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되기는 어렵지만, 건물 및 구조물의 사전 안전성을 높이는 설계 및 설치에 관련한 법은 과거와 현재의 기상 상황 및 기술 발전에 따른 조사와 검토를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있다.

풍하중 조례 규정을 웃도는 토네이도 바람세기 때문에 곤혹을 치룬 루체른 카운티의 경우, 향후 건물 및 구조물 설치 시 풍하중 요건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물론 풍하중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았다. 해당 지역에서 건물 및 구조물 설치에 대한 풍하중 요건 충족은 새로운 건축물이나 중요한 개조 공사 시 의무화되기 때문에 모든 건물 및 구조물이 풍하중 요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 낡은 건물의 소유주 및 구식 옥외광고물 주에게 풍하중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당국은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강풍으로 붕괴될 경우 날아다녀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간판이나 각종 구조물이 건물이나 지지대에 안전하게 부착되었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비상상황에 대처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 옥외광고물 관리 매뉴얼 안전관리 규정

이와 함께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점검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인디애나 주의 경우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통해 옥외광고물 허가 과정 및 보수, 유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인디애

나 주의 옥외광고물 관리 매뉴얼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하지 않았지만 기존 관련법을 적용해 세워진 구식 부적합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리 및 제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구식 부적합 옥외광고물의 경우 외력에 의한 붕괴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주와 지자체는 구식 부적합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항을 따로 두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주는 옥외광고물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마련하고 있다. 알라배마 주 교통국은 옥외광고물 매뉴얼을 통해 옥외광고물 감정인이 옥외광고물을 허가 및 재허가하는 과정에서 숙지해야할 절차 및 평가 과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알라배마 주의 옥외광고 매뉴얼은 옥외광고물의 감가상각을 평가하는 데 있어 물리적 손상, 기능상의 노후화 및 경제적 진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매뉴얼은 물리적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도표 등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점검자의 평가를 돕고 있다. 해당 도표는 물리적 손상도 0%는 새것과 같은 상태, 1-10%는 모든 부분이 견고해 보이나 페인트칠이 약간 벗겨지는 등의 사소한 손상, 11-25%는 구조물은 기본적으로 견고해 보이지만 몰딩 파트나 일부 파트의 1-10%가 교체되어야 하는 상태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변형이나 부식 등 옥외광고물의 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결함을 미리 파악해 옥외광고물을 보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옥외광고물의 실시간 전송 상황이 모니터링 되는 디지털 빌보드의 경우 각 옥외광고물 업체가 안전관리 상황 또한 함께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도 등장해 향후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 방법은 더욱 다채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과 함께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각 주와 지자체의 법적, 정책적 토대 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옥외광고물 관련 안전관리 시스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전역에서 통합적으로 활용되는 미국 국제건축법을 통해 옥외광고물이 설계 및 설치되도록 기준을 마련해 사전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건축법은 기상 변화에 대한 오랜 데이터 축적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서 건물 및 구조물 설치 시 각종 하중 및 준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사전 안

정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 건축법을 강제하지 않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기준 설정을 장려하고 있다. 각 옥외광고물 유형별 크기 및 제한 규정 또한 함께 제안함으로써 미국의 각종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에 통합성을 기하고 각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기본 규정을 마련했다.

둘째, 미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국제건축법을 바탕으로 조례를 규정하고 옥외광고물의 구체적인 허가과정 및 보수, 유지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조례를 통해 각 지자체는 허가된 전문가나 건축가 등의 입회 하에 옥외광고물 설계 및 설치를 진행하도록 해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보수와 유지 규정을 통해 사후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각 주는 옥외광고물 관련 주 법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안전한 관리를 돕고 있다. 각 주는 지자체가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토대 및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자 및 점검자 등 관련 당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넷째, 뉴욕 시의 사례와 같이 통합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뉴욕 시는 온라인을 통한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점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진행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단계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와 점검과정 확인을 거쳐야만 허가 및 재허가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안전 관리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태풍 등 비상상황 발생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붕괴 시 풍하중 관련 조례를 보완하거나 구식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부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관련법과 정책이 완벽할 수 없는 만큼 천재지변에 대비해 옥외광고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관련 당사자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통합적인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제안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옥외광고물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통합적 법체계 마련과 이에 대한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에서 국제건축법을 통해 다른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옥외광고물의 안전 설치 및 설계 기준이 제안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옥외광고센터의 옥외광고물 매뉴얼 등을 바탕으로 사후 관리 또는 안전점검 위주의 옥외광고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국민안전처 및 소방방재청의 옥외광고물 구조적 설계 절차에 대한 제안, 옥외광고물 관련 건축구조기준안 등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안전한 설계 및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지만, 국내 중소 규모

의 옥외광고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옥외광고물 안전설치 기준은 미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사후 안전관리 위주였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 우수업체 인증 시범사업 실시에 나섰다. 장기적으로 옥외광고물의 사전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제건축법과 같은 기본적이고 통합적인 옥외광고물 설계 및 설치 기준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조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옥외광고물의 경우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옥외광고물의 사전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은 필수적이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관련 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중소 규모의 옥외광고업체도 옥외광고물의 안전한 설계 및 설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뉴욕의 공공 포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옥외광고물 허가 관리와 간판 설치자 규정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포털을 통해 허가 및 안전점검 과정을 진행하고, 관련 수수료 납부 등을 일원화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것은 물론 허가 및 재허가 과정에서 안전점검 단계를 의무화해 옥외광고물의 사전 및 사후 안전성 또한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부를 제외하고 면허를 가진 간판설치자만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뉴욕 시의 사례와 같이 옥외광고업자의 옥외광고물 설치 면허 기준을 강화하거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안전 설치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안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등록된 전문 기술자나 허가된 건축가가 옥외광고물 설계 및 계획에 참여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보완책이 될 수 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안전 기준이 미비한 상태로 세워진 옥외광고물은 강풍에 쉽게 붕괴될 수밖에 없다.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통합적인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법 및 안전설계 기준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활용 확대 등 옥외광고물 점검 정책 또한 강화해 나간다면,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참고문헌

* 뉴욕 시 행정법 N.Y. 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 28-415.3 - Classification 〈https://www.lawserver.com/law/state/new-york/ny-laws/ny_new_york_city_administrative_code_28-415-3〉.

* 뉴욕 시 간판 설치자 면허 관련 사항 〈https://www1.nyc.gov/nycbusiness/description/sign-hanger-license〉.

* 뉴욕 시 옥외광고물 유형에 따른 허가 사항 〈https://www1.nyc.gov/site/buildings/business/signs.page〉.

* 위스콘신 주 저맨타운 조닝 코드 규정 〈https://www.village.germantown.wi.us/DocumentCenter/View/43/Zoning-Code-Section-1746-Signs-Spring-2011pdf?bidId〉.

* 텍사스 주 켐프너 시 옥외광고물 조례 〈http://cityofkempner.org/Sign%20Ordinance.pdf〉.

* 텍사스 주 캘로톤 시 옥외광고물 조례 〈http://www.cityofcarrollton.com/home/showdocument?id=9614〉.

* ICC Signage Code, Hurricanewv, 〈http://www.hurricanewv.com/assets/page-uploads/Signage_Code.pdf〉.

* 2015 International Building Code, Appendix-H Signs, 〈https://codes.iccsafe.org/public/document/IBC2015/appendix-h-signs〉.

*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한 뉴욕시 건축국 공공 포털 홈페이지 〈https://a810-dobnow.nyc.gov/publish/#/〉.

* 뉴욕 시 DOB-NOW 홈페이지 〈https://www1.nyc.gov/site/buildings/industry/dob-now.page〉.

* Andes, J. (2018. 6. 16) Code requires Pa. buildings withstand 90 mph winds. Times Leader 〈https://www.timesleader.com/news/708273/code-requires-pa-buildings-withstand-90-mph-winds〉.

* Indian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14, 2, 6, 중간개정), Outdoor Advertising Control Manual. 〈https://secure.in.gov/indot/files/Permits_OutdoorAdvertisingControlManual_2014.pdf〉.

* ALDOT, (2015년 1월 개정) Outdoor Advertising Manual. 〈https://www.dot.state.al.us/rwweb/doc/row/ProceduralManuals/OutdoorAdvertisingSignsManual(Rev2015).pdf〉.

* Lee, S., Kim, J., Ham, H., & Kim, J. (2016) Estimation of Standard Load for Disaster-Resistant Design of Outdoor Signboards, Journal of the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Vol.29 No.2 pp.131-140 〈http://www.jcoseik.or.kr/journal/article.php?code=45701〉.

* 정우영(2013), 강풍에 의한 옥외광고구조물 피해저감을 위한 안전설치 기준 및 고성능 부착제품 개발,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http://www.ndsl.kr/ndsl/commons/util/ndslOriginalView.do?dbt=TRKO&cn=TRKO201300031732&rn=&url=&pageCode=PG18〉.

*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2017. 9.27) 17년도 옥외광고물 안전 우수업체 인증신청 공고〈http://www.koaa.or.kr/index_subpage.htm?para=aW5kZXhfc3VicGFnZS5odG0ma29hYW9yZ19wdWJsaWNib2FyZCZrb2Fhb3JnX3B1YmxpY2JvYXJkbWVtbyYxMCYxJiYmJjlmJnVwbG9hZCZ0b3BzdyBBU0MsIHNpZ25kYXRlIERFU0MmJg==&page=1&number=25132&pdisplay_sw=5〉.

점검 기준과 방법 제시에 비해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실시는 미흡

일본

Japan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가 일본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건 2015년 2월 삿포로 시에서 일어난 간판 낙하 사고가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화와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옥외광고물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기준과 방법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실시 등이 임의요청이나 권고에 그치는 점 등은 여전히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주요 도시의 조례를 통해 일본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체계의 현황을 짚어본다.

* 글 _ **박미경** 해외통신원(일본 오사카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Ⅰ. 서론

아름다운 광고물도 시간의 경과와 함께 노후화된다. 외견으로 볼 때 곧바로 나타나지 않아도 잘 점검하다보면 균열이나 부식된 곳이 있는 등 위험한 상태인 것이 많이 있다. 특히 건축물의 중・고층부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이 강풍 등으로 인하여 낙하하게 되면 큰 피해가 발생되고 설치자(광고주) 또는 관리자의 법적책임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준수하여 내부점검 등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평소에도 시설의 안전관리에 충분히 유의하여 광고물을 적정하게 설치・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도 최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옥외광고물의 낙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옥외광고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 2015년 2월에는 삿포로 시 빌딩 외벽에 걸려있던 간판의 일부가 낙하하면서 보행 중인 여성의 머리에 부딪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를 계

기로 일본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의무화와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토교통성은 옥외광고물의 소유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화로 인해 붕괴 · 낙하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신속한 철거,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도할 것을 지방공공단체에게 의뢰하였고, 옥외광고물의 낙하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연락을 취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옥외광고물 소유자들에게 일상 관리 시 유의사항이나 일상점검 체크 포인트 등을 정리한 〈간판 소유자들을 위한 간판의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옥외광고물 적정화 추진위원회가 정리하였다. 또한 2016년 4월에는 옥외광고물 소유자들의 점검 촉진, 허가변경 신청을 행하는 경우 점검 결과 제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조례 가이드라인(안)을 개정하기도 하였다.

Ⅱ. 옥외광고물 조례와 관련 지침에서의 안전관리 및 점검

국토교통성은 옥외광고물 조례를 제 · 개정 시 참고자료로 옥외광고물 조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데, 일부 개정이 2013년 4월 28일에 이루어졌다.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옥외광고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①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책무가 있다는 것과 ②옥외광고사 등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옥외광고물 점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규정이 추가되었다.

1. 국토교통성 옥외광고물 조례 가이드라인(2013년 4월 28일 개정)

(관리의무)

제19조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게시물건을 설치하는 자나 이를 관리하는 자 또는 광고물 또는 게시물 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이하 '광고물의 소유자 등'이라 함)는 이에 관한 보수, 제거 등 기타 필요한 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며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도쿄도 옥외광고물 조례

간판 등(광고물 등)의 광고주, 소유자, 광고주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자 등은 보수 및 기타 필요한 관리를 행하여 옥외광고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관리자가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로 부과되어 있다. 구조 또는 설치방법이 위험한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낙하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조례로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리의무)

광고주, 광고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자 또는 광고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기타 해당 광고물 등에 대해서 권원을 가진 자(제4장에서 '소유자 등'이라 한다.) 또는 해당 광고물 등 관리자(이하 '광고물 표시자 등'이라 함)는 광고물 등에 관한 보수, 기타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하며, 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3. 삿포로 시 사례

1) 삿포로 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지침'

삿포로 시는 간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후 가장 적극적으로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삿포로 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16조에 "광고물의 관리자는 광고주(광고물의 설치자)와 함께 광고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 기타 필요한 관리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물에 의하여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 책임을 지게 된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광고물 등의 적절한 유지 · 관리를 할 책임이

있다. 이들이 자주적으로 광고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삿포로 시는 별도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지침'을 제정하여 2015년 12월 1일부터 운용하고 있다. 설치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 노후화에 따른 붕괴, 낙하 등의 우려가 있는 간판의 경우에는 광고주가 신속하게 철거, 개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 취지] 이 관리지침은 모토이치 역 내의 광고물 또는 광고물을 게시하는 물건(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 있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 또는 해당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광고물 등의 적절한 유지관리 책임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실시하고 광고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삿포로 시 옥외광고물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1조에 규정되고 있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적용범위] 이 관리지침은 광고물 중 삿포로 시 옥외광고물 조례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광고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 점검의 실시]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광고물 등의 종류, 설치년수 및 설치상황에 따라서 다음의 점들을 검사한다. ①광고물 등의 재료의 노화, 녹의 발생 등으로 구성부 재료가 파손하거나 낙하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점검은 육안으로 뿐만 아니라 내부의 부식 등의 확인, 기타 광고물 등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점검 시에는 규칙 제4조 제1항(양식 3) 광고물 등 안전점검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광고물 등의 형상 등에 따라 점검항목을 적절히 증감하고 점검해야 한다. 조례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을 때 점검 외에 광고물 등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날씨의 급격한 변화 또는 지진 등 재해발생의 예보가 있는 경우나 발생한 경우에 광고물 등의 안전성에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곧바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4 위해방지 조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와 같이 위해방지 조치를 마련한다. ①점검 결과, 해당 광고물 등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치자 및 관리자는 협력하여 광고물 등의 상태에 따라 스스로 보수, 개수 및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설치 후, 장기간 경과하여 노후화가 인정되는 광고물 등은 개수 또는 철거해야 한다.

[제5 점검결과의 보관]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점검을 실시한 경우, 실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또한 설치자와 관리자는 점검결과를 공유해야 한다.

2) 삿포로 시 '안전점검보고서'

관리자는 광고물의 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리자는 광고주(광고물 설치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신속히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자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광고물 점검에 대한 사진 첨부, 점검 방법, 소견을 기재해야 한다(2015년 12월부터 적용됨).

옥외광고물의 경우, 관리자가 갱신허가를 신청할 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판의 설치 이후 설치자에게 3년에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는 관리자의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요구된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광고주(광고물 설치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신속하게 개선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안전점검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있음이 인정된 경우, 동 조례 제6조의 광고물의 미관이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금지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물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갱신 신청을 불허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Ⅲ. 옥외광고물 종류별 점검해야할 부분

2017년 7월 국토교통성 도시국 공원녹지・경관과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관한 지침(안)'을 작성하였다. 동 지침(안)에는 옥외광고물 중 가장 많이 설치되는 형태인 돌출 간판, 건식 간판(建植看板)[1], 벽면 간판에서 노후화가 쉽게 발생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있다.

1. 옥외광고물 허가 갱신 시 안전점검보고서 제출 등

옥외광고물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방공공단체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소유자 등이 갱신허가신청을 할 때 안전점검보고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공공단체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안전점검보고서의 양식에 기재하고 있는 점검항목과 점검내용은 다양하다. 특히 안전점검보고서의 점검항목과 점검내용을 6개 항목 또는 7개 항목으로만 설정하고 있는 지방공공단체가 대

1) 건식 간판이란, 목재 또는 금속 등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게시된 것이며 지상에 세워진 것을 말한다(야립 간판, 자립광고물 또는 형상에 따라 폴 간판이라고도 한다. 다만 '아치 간판'은 제외)

부분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점검보고서의 점검항목과 점검내용을 세분화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노후화 등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을 바탕으로 점검부분과 점검항목 등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한다.

2. 점검 부분 및 점검 항목

1) 돌출 간판 : 간판의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법에 따라 '공작물 확인신청'이 필요하다. 높이 4m 이하의 경우에도 강도 계산을 한 후 설치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벽면 간판 : 벽면에 접착한 이후 벽면과 접촉되는 부분에 코팅을 하여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 야립 간판 : 야립 간판은 간판의 지지부분(기둥)의 노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간판 본체와 간판의 지지부분의 접합 부분에 녹이 슬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1) 점검 부분 : 기초부 상부 구조

〈점검 항목〉

① 상부구조 전체 경사 발생, 흔들림

② 기초부분의 갈라짐, 지주와 간판이 박혀있는 부분의 빈틈, 지주의 흔들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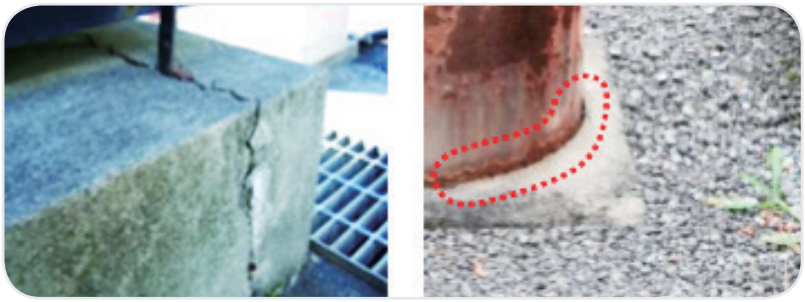

③ 철골의 녹 발생, 도장의 노후화

(2) 점검 부분 : 지지부

〈점검 항목〉

① 철골접합부(용접부 플레이트)의 부식 변형 및 틈새

② 철골접합부(볼트, 너트, 나사)의 느슨함, 누락

(3) 점검 부분 : 부착부

〈점검 항목〉

① 앵커 볼트 · 부착부분 플레이트의 부식 및 변형

② 용접부분의 노후화, 코킹의 악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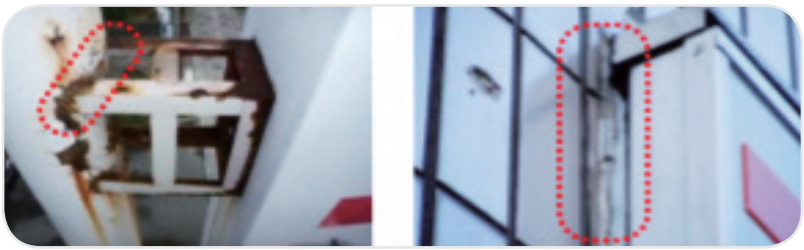

③ 설치 대상 부분(기둥 · 벽 · 슬라브 · 부착 부분) 주변의 이상

(4) 점검 부분 : 광고판

〈점검 항목〉

① 표시면, 잘려진 문자 등의 부식, 파손, 변형, 나사 등의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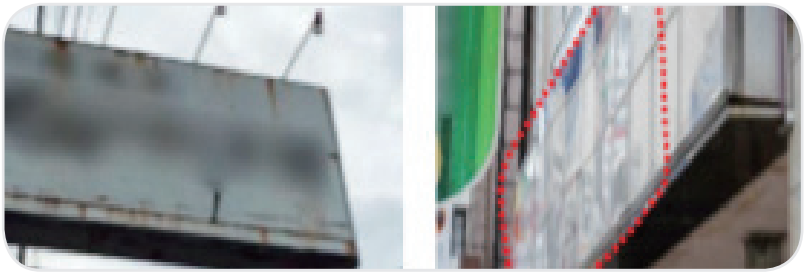

② 광고판 바닥의 부식, 물구멍의 막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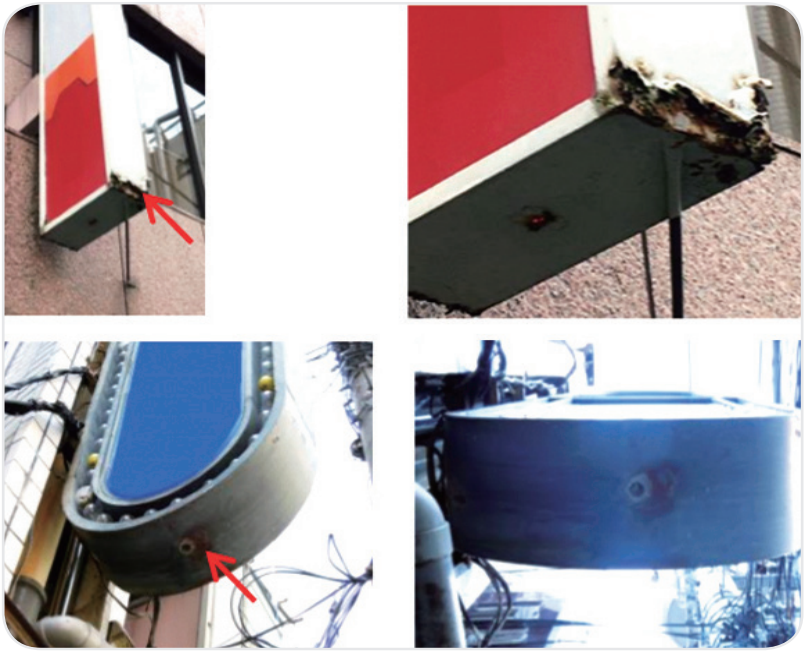

(5) 점검 부분 : 조명장치

〈점검 항목〉

① 조명장치의 점등, 불량 발광

② 조명장치 장착부의 파손 변형, 녹, 누수

③ 주변기기의 노후화, 파손

(6) 점검 부분 : 기타

〈점검 항목〉
① 부속 재료의 부식 파손
② 피뢰침의 부식 손상
③ 기타 점검사항

3. 안전점검보고서에 따른 확인을 위한 유의사항

안전점검보고서 양식에는 점검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자격 명칭을 기록하는 항목이 있으며, 점검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옥외광고물 조례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점검자의 자격인정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한다.
점검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눈, 타진(打診) 등으로 손상, 변형, 부식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안전점검보고서에는 옥외광고물의 전체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점검 부분 · 점검 항목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컬러사진이나 보수 등을 실시한 부분의 보수 전후의 컬러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안전점검보고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안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옥외광고물의 소유자 등이 안전성에 대하여 확인을 실시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한다.

4. 지방공공단체의 소유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지방공공단체가 옥외광고물 허가 갱신 시에는 소유자 등에게 요구하는 안전점검과는 별도로 소유자 등에게 실효성 있는 점검을 연 1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지방공공단체가 안전순찰 등을 실시하는 경우 현지 확인 방법

지방공공단체가 안전순찰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을 할 때 확인해야 하는 장소 및 확인 방법, 현지 확인 시 이상을 확인한 경우의 대응 등을 아래에서 정리하고 있다.

1) 확인 장소 및 확인 방법

- 현지 확인 시 지주와 지지부 광고판저부의 부식, 측면판 등의 변형 · 파손 · 부자재의 누락, 표시판의 이음매 등 제시
- 현지 확인은 육안으로 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옥외광고물 적정화 추진위원회(옥외광고물을 이해할 목적으로 전국의 옥외광고물에 종사하는 지식인, 국토교통성 지방공공단체의 옥외광고 행정 담당자 및 업계 관계자로 조직하는 산학관 연대 네트워크)'는 옥외광고물의 안전대책에 관한 보급용 책자를 작성하였다.

1. 소유자의 일상점검과 초동대처

옥외광고의 정기점검은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소유자들도 가능한 한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영업일에는 반드시 안전 패트롤을 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접근금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라면 경찰에 연락을 취해야 할 것이다.

- 간판소유자의 일상점검항목
  ① 지주에서 녹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야립 간판, 장대 간판 등)
  ② 간판이 한쪽으로 기울여지지 않았는가? (야립 간판, 장대 간판 등)
  ③ 플래킷 부분에 녹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돌출 간판)
  ④ 간판은 벽으로부터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돌출 간판)
  ⑤ 아크릴 판에 금은 없는가? (공통)
  ⑥ 아크릴 판이 벗겨지지는 않았는가? (공통)
  ⑦ 표시면이 덜렁되지는 않는가? (야립 간판, 벽면 간판)
  ⑧ 조명이 불점등 되는 부분은 없는가? (공통)
  ⑨ 조명기구가 쏠려있거나 다른 부분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외조명식 간판)
  ⑩ 간판의 부자재가 없거나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공통)

2. 전문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일상점검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상세한 점검이 이루어진다. 정기점검에서 발견하였던 문제점, 대응방법,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사진이나 자료 등을 제시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 전문가가 확인해야 할 것
  ① 용접부분의 균열이나 절단 상태 (공통)
  ② 볼트와 나사의 조임 상태 (공통)
  ③ 구조체의 부식이나 녹이 슨 상황 (공통)
  ④ 전기배선의 노후화 상태 (공통)
  ⑤ 개폐 부분(열쇠고리 등)의 상태 (공통)
  ⑥ 외부 조명식의 기구, 설치기구 부속의 상태 (야립 간판 벽면간판, 옥외광고판)
  ⑦ 방수 상태 (벽면 간판, 돌출 간판)
  ⑧ 조명기구의 교환 (공통)
  ⑨ 간판 청소 (공통)
  ⑩ 내부철골의 보수, 개수 등 (공통)

⑪ 부품교환 (공통)
⑫ 신청서류의 작성 (공통)
⑬ 정기점검 일정 관리 (공통)
⑭ 점검보고서 작성 (공통)
⑮ 간판별 관리대장의 작성 (공통)
⑯ 검사기구를 사용한 점검 (공통)
⑰ 임시점검(진도 5강 이상의 지진이나 대형 태풍 이후) (공통)

1. 홋카이도

홋카이도에서는 다양한 옥외광고물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홋카이도 옥외광고업 단체연합회와 연계하여 낙하의 우려가 있는 위험한 간판 등에 관한 연락과 상담을 받는 '옥외광고 세이프티 핫라인'을 개설하였다. 일반 주민으로부터 연락이나 상담을 받는다. 이는 2015년 4월에 개설되었다.
홋카이도는 2015년도부터 매년 9월 1달간 홋카이도와 홋카이도 옥외광고업 단체연합회가 합동하여 '관민 제휴 옥외광고물 안전대책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홋카이도의 14개 각 진흥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를 각각 설정하고 홋카이도 옥외광고업 단체연합회와 연계하여 지역 내 옥외광고물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그 결과 위험 또는 점검요망으로 판정되면 문서통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위반 광고물에 대한 시정지도도 함께 하고 있다.

2. 카나자와 시

카나자와 시는 옥외광고물의 낙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도부터 시내 중심부를 중심으로 광고물 전문가인 이시카와 현 옥외광고업 협동조합에 주로 돌출 간판 등의 위험도 판정업무를 위탁(계약기간은 약 1년간)하여 위험도가 높다고 판정되는 경우, 카나자와 시가 개수 등의 지도를 행하여 옥외

광고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낙하 가능성 있는 모든 돌출 간판(허가신청이 불필요한 간판 포함)을 중심으로 볼트의 풀림, 부착부의 노후화 간판의 파손 등을 육안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즉시 수선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일 조합에 의해 시로 보고된다.

위험도 판정 구분 : 조사결과를 위험도 A~C로 구분한다.

- 위험도 A : 낙하 등의 우려가 없고 안전상 문제없음.
- 위험도 B : 다소의 노후화가 보이며 상세한 안전점검이 필요함.
- 위험도 C : 해당 광고물에 중대한 결함이 보이며 즉시 수선 또는 철거 필요.

Ⅵ. 결론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물 조례 등에 의거하여 옥외광고물을 게시 또는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며, 이들에게 옥외광고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설치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나사, 볼트 등이 풀려있는지, 녹이 발생하였는지 등),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기점검과 더불어 강풍, 지진 이후에는 즉각적으로 점검할 것 역시 권고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유관 행정기관들의 대처 상황을 조사한다거나 그 현황과 과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가 광고주나 설치자에게 자율적인 의무로 부과되고 있으며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의 실시가 여전히 권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상술한 바대로 삿포로 시에서의 간판 낙하 사고 이후 국

토교통성은 지방자치단체에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 달라는 것 역시 임의로 요청한 것이었다.
일본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기준과 방법은 잘 제시되어 있으나 여전히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실시 등 임의요청이나 권고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문헌

* 国土交通省. “看板の安全管理 ガイドブック -国土交通省” 〈www.mlit.go.jp/common/001106308.pdf〉.

* 国土交通省. “屋外広告物の安全点検に関する指針（案） - 国土交通省” 〈www.mlit.go.jp/common/001194384.pdf〉.

* 国土交通省. “屋外広告物条例ガイドライン（案）” 〈http://www.mlit.go.jp/toshi/townscape/okugaikoukokuguideline160428.html〉.

* 総務省. “屋外広告物等の安全性確保に関する実態調査 - 総務省” 〈www.soumu.go.jp/main_content/000484845.pdf〉.

* 東京都. “屋外広告物条例” 〈www.reiki.metro.tokyo.jp/reiki_honbun/ag10111831.html〉.

* 東京都都市整備局. “屋外広告物の安全管理義務” 〈www.toshiseibi.metro.tokyo.jp/kenchiku/koukoku/kou_anzen.htm〉.

* 札幌市. “屋外広告物の安全管理について” 〈http://www.city.sapporo.jp/kensetsu/dokan/kokoku/anzentenken.html〉.

* 札幌市. “札幌市屋外広告物安全管理指針” 〈http://www.city.sapporo.jp/kensetsu/dokan/kokoku/anzentenken.html〉.

* 札幌市. “広告物等安全点検報告書” 〈http://www.city.sapporo.jp/kensetsu/dokan/kokoku/anzentenken.html〉.

* 北海道. “北海道屋外広告物管理指針解説” 〈http://www.pref.hokkaido.lg.jp/kn/tki/mdr/koukoku/kanrishishinkaisetsu.htm〉.

* 北海道. “屋外広告物の安全管理について” 〈http://www.pref.hokkaido.lg.jp/kn/tki/mdr/koukoku/anzenkanri.htm〉.

* 建設部まちづくり局都市計画課. “屋外広告物の安全管理の徹底について” 〈www.pref.hokkaido.lg.jp/kn/tki/mdr/koukoku/anzenkanrinotettei.htm〉.

Mission 02 해외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체계 분석

대형 옥외광고물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강화

중국

China

중국의 대형 옥외광고물은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 광고 산업의 성장을 의미하는 한편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대형 옥외광고물이 늘어나면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을 포함한 안전관리 규정을 시행 중이며, 2년이 지난 옥외광고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검점 검사를 실시해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신속한 수리보수 및 철거를 명령하고 있다.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장려하고 있다. 대형 옥외광고물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안전사고 최소화를 실천 중인 중국의 사례를 만나본다.

* 글 _ **이지행** 해외통신원(중국 광동외국어대외무역대학 전임강사)

Ⅰ. 서론

최근 중국의 광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전자기술을 이용한 대형 LED광고, 대형 빌보드, 기둥식 옥외광고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옥외광고에 대한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광고 설치의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피해가 과거에 비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이며 평소 유지보수 및 관리가 필요한 노후한 시설들이다. 아울러 이러한 안전사고는 도시 전체의 주민 안전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태풍, 폭우, 폭설 등 기상악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중국의 각 시정부는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정해진 기한에 모든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기준에 미치

그림 3 중국 옥외광고의 낙하, 파손

※ 출처 : 바이두 https://tieba.baidu.com/index.html

지 못하는 광고시설의 경우 법적 처벌을 가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에 개정된 중국의 각 시 정부 '옥외광고 관리조치'는 옥외광고 안전문제에 대한 관련 법안을 이미 제정하였으며, 북경 시는 2015년 4월 '북경 시 옥외광고 시설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중국의 각 시정부는 옥외광고 관리 조치의 제정을 통해 옥외광고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있다.

1. 북경 시 옥외광고시설 안전관리 규정

북경 시 시정부 미관관리위원회는 2015년 4월 29일 북경 시 옥외광고시설 안전관리규정을 새롭게 공포하였다. 총 5장(제1장 총칙, 제2장 부서의 장 및 직책분리, 제3장 계획 및 건설, 제4장 운영 및 보호관리, 제5장 부칙) 18조로 구성되어 있다. 북경 시의 옥외광고시설 안전관리 업무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북경 시 안전생산 조례'와 '북경 시 옥외광고시설관리 조치' 규정에 근거

하여 관리의 권한 및 직책을 나눈다. 시의 시 미관관리행정부는 북경 시의 옥외광고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지며, 구(区), 현(县) 시 정부 미관관리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옥외광고시설의 안전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제4조). 시의 시정부와 구, 현 시정부 미관관리행정부의 옥외광고 안전업무는 아래 다음과 같다.

1) 북경 시 정부 미관관리행정부의 주요 직책

- 국가와 본 시의 안전과 법률, 법규, 규정 및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본 시와 관련된 지역의 안전규정, 규칙의 초안을 작성하고 조직시설과 관련된 관리규정, 기술표준을 입안한다.
- 시정부는 안전업무의 분배 및 요구에 관한 정책에 대해 정해진 기간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업종의 업무 추세에 관한 연구 분석을 통해 관련업무 및 계획, 조치, 주위환경과의 조화와 관련되어 잠재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
- 안전 특별정비 확대 실시의 일환으로 구(区), 현(县) 시정부 시 미관행정부와 관련 단체에게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하나하나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독촉한다.
- 안전긴급대비책 제정 및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해 사고조사처리 업무를 실행한다.
- 안전홍보 및 교육훈련을 계획 관리한다.
- 시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 선로 및 순환선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된 대형 옥외광고시설의 평소 안전관리 및 운행보호 관리에 근거하여 관리된다.

2) 구, 현 시정부 시 미관관리행정부의 주요 직책

- 국가 및 본 시는 안전생산 방면의 법률, 법규, 규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의 철저한 집행을 위해 상급 유관부서가 안배 및 배치한 각종 안전업무 임무를 시행한다.
- '북경 시 옥외광고 설치관리조치', '북경 시 간판표지 설치관리규범'과 '옥외광고시설 기술규범〉 등 관련된 규정, 규범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고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법에 의거하여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안전생산 검사관리 직책을 이행한다.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의 평소 안전순찰 및 잠재되어 있는 잠재위험 요소를 검사하는 제도를 책임진다. 평소 거리, 농촌, 소도시 관할 옥외광고, 간판표지의 안전검사 업무 및 태풍, 폭우 등 기상악화 시 신속히 거리, 농촌, 소도시 유관 단체는 해당 옥외광고 및 간판에 대한 검사 및 순찰을 실시한다. 또한 거리, 농촌, 소도시의 유관 단체는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옥외광고시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해당 연구제도 및 조치, 위험요소 제거 및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완성한다.

- '옥외광고시설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본 지역 안전검사 범위의 각종 옥외광고시설 및 대형 간판표지시설은 정해진 기간 검측을 하고, 검사기관의 안전검사 진행, 전체 업무의 개혁 등을 감독한다. 해당 구, 현 시정부 미관위원회는 옥외광고시설의 통일된 설치 및 경영, 안전에 관한 모든 비용은 본 시 재정예산으로 해결한다. 기타 옥외광고시설과 간판표시 시설의 안전검사 비용은 시설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법인, 개인)가 지불한다.
- 본 행정구역 옥외광고에 돌발 상황 발생 시 긴급대응 처리 방안, 정확한 책임규명, 관련기관, 담당공무원, 차량 등 모든 안전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제정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의해 상급기관에 보고하며 현장의 안전처리 및 기타 업무사항은 해당 부서가 서로 협조하여 조사 처리한다.
- 본 시 관할 주요도로 및 주요구역에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회사와 간판표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옥외광고(간판표지)시설 안전운행 책임보증서'에 서명해야 한다.
- 발견된 본 관할구역 내 불법 옥외광고시설은 신속히 관련 법 집행부서에서 법에 의거하여 조사 처리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회사 혹은 해당 시설의 안전책임자는 광고시설 운영 보호관리 제도를 따라야 한다. 대형 착지식 옥외광고시설, 거리 10m 이상의 부착식 옥외광고, 대형전광판과 고층건축물 옥상에 2m 이상의 간판은 기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보호 관리한다. 태풍, 폭우, 번개 등 기상악화 발생 시 모든 옥외광고시설은 신속히 검사, 순찰, 사고방지 등의 보호 관리를 받아야 한다(제10조 참조). 옥외광고시설은 설치기간 내 시설구조가 단단하고 견고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이 얼룩, 퇴색 혹은 전광판의 등(灯)이 밝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시켜야 한다. 아울러 구조, 전기, 화재 등 비교적 안전상 큰 잠재위험 요인이 발견된 경우 설치 회사 혹은 안전관리자는 신속히 해당 시 정부 미관관리행정부에 보고하며

문제가 발견된 시설을 정해진 기한 내 철거하거나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설치장소에 경고표지를 설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제11조 참조).

옥외광고시설 보호관리 및 화면교체, 전기용접 등 특수한 업종에 종사는 직원들은 해당 관리부의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일련의 과정에 합격한 후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또한 작업 중에도 안전관리 규정의 요구를 준수해야 하고 불법조작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제12조 참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행정 주관부서는 정해진 기한 관할구역 내 옥외광고시설에 대해 전문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발급한다. 대형 착지식 옥외광고시설, 거리 10m 이상 부착형 옥외광고, 대형 전광판과 고층 건축물 옥상 2m 이상인 간판은 처음 간판이 설치된 2년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이후 매년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검사측량, 검사기관은 안전점검보고서 발급 시 보고서의 안전평가, 인증, 검사 결과 및 검사 의견 등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진다. 검사 결과 시설에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검사 후 안전에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해당 광고시설을 수리를 하거나 철거한다(제13조 참조).

위법 설치된 옥외광고 혹은 간판이 추락하거나 쓰러져서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옥외광고시설 소유권자와 위법 설치자는 법적 책임을 진다. 또한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옥외광고시설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책임자는 도시 관리 법집행부와 안전관리검사부의 입법 처벌을 받게 된다.

2. 상해 시 옥외광고시설 관리 조치 안전규정

'상해 시 옥외광고시설 관리 조치'에는 옥외광고시설 설치자가 '상해 시 도시미관 환경위생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시설의 평소 관리 및 안전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옥외광고시설을 견고히 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해 시에 설치된 옥외광고시설은 설치 후 2년이 지난 매년 6월 1일 전 옥외광고시설의 안전기술검사, 즉 표준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 혹은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에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

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 해당 시설의 설치자는 즉시 수리보수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을 제작한 설계회사는 옥외광고시설의 설계사용 연도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또한 옥외광고시설이 설계 사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설치자는 즉시 새로운 시설로 교체해야 한다. 시와 구(현)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서, 도시관리 행정집행부는 옥외광고시설 안전관리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율에 따라 옥외광고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추출하여 조사한다. 아울러 옥외광고시설의 안전기술표준은 시 녹화미관 행정관리부서, 시 질량감독 행정주관부서와 협력하여 별로도 제정한다.

3. 광저우 시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관리 조치 안전규정

'광저우시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관리 조치'에서는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자를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의 유지보호 및 관리를 책임지는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기간이 도달한 경우 해당 옥외광고 및 간판에 대한 안전점검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만약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에 잠재된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즉시 예방조치를 채택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수리 혹은 철거해야 한다.

태풍, 폭우 등 기상이상 현상으로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채택한다. 그중 설치가 2년이 지난 간판일 경우 설치자는 매년 6월 1일 전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규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옥외광고시설이 철골구조인 경우 설치자는 '옥외광고 설치증' 허가기관에 구조안전질량의 안전점검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설치자는 즉시 해당 시설을 수리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이 정해진 사용기간에 다 달은 경우 설치자는 새로운 시설로 교체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의 제작, 수리, 교체 기간 현장에 위험경고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시의 각 구역과 현급의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발견한 경우 설치자에게 기한 내 수리 및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자는 평소 시설의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의 청결, 미관,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장해야 한다. 옥외광고 및 간판의 화면이 훼손되거나 퇴색되고 글자의 일부가 손상되는 등 도시 미관형상에 영향을 미칠 경우 즉시 수리하거나 새로운 시설로 교체해야 한다. 아울러 야간 조명시설의 배치는 조명의 기능이 완전할 수 있어야 하며, 네온사인, LED광고 시설의 스크린화면 역시 완벽하게 관리, 유지되어야 한다. 조명의 등이 밝지 않거나 중간에 등이 깜빡거리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수리보수하거나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며 수리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을 잠시 중지한다.

도시 관리 종합 집행기관은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의 순찰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 및 간판의 화면이 훼손, 퇴색, 글자의 일부가 손상되는 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설치자에게 즉시 수리,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네온사인, LED광고의 밝기가 규정보다 어둡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설치자에게 수리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수리기간 해당 시설의 사용을 잠시 중지한다.

Ⅲ. 중국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사례

중국에서 옥외광고물의 낙하, 파손 등으로 타인의 신체,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 보통 해당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자, 경영자, 광고주가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낙하, 파손된 옥외광고시설이 불법 및 위법광고시설인 경우 시설의 설치자, 경영자, 광고주는 벌금 및 처벌을 받게 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지난 2013년 12월 계림 시(桂林市)에서 대형 옥외광고시설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되어 있던 3대의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었다.

그림 4 계림 시 옥외광고 안전사고

※ 출처 : 계림생활망, http://news.guilinlife.com/

해당 기관의 조사 결과 오랜 기간 수리보수를 하지 않은 옥외광고시설이었으며 안전상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2년간 계림 시에서는 낙후된 옥외광고시설이 낙하, 추락하여 지나가던 행인을 덮치거나 차량을 덮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였다. 시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해당 광고물의 설치자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계림 시 옥외광고 관리 조례'의 안전관리 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3대의 파손된 차량에 대한 배상 및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후 계림 시 시 미관국은 시민들에게 안전에 위험이 있는 옥외광고를 발견한 즉시 신고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신고접수를 받은 후 시의 도시관리부, 교통부, 공안부, 시 미관국은 해당 광고시설을 조사하여 처리하였다. 향후 계림시는 옥외광고 관리 조례 중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시민들의 신고를 적극 장려하여 정부와 시민이 협력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Ⅳ. 결론

중국 옥외광고의 안전관리는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각 시가 제정한 '옥외광고 관리 조치' 및 '옥외광고시설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둘째, 보통 2년을 넘긴 옥외광고시설은 안전점검 검사를 실시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속히 수리보수 및 철거해야 한다. 아울러 옥외광고시설이 철골구조인 경우 설치자는 '옥외광고 설치증' 허가기관에 구조안전질량의 안전점검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 최근 불법광고물 또는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광고시설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고 있다. 매 분기 종합적인 안전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모바일방식 또는 서면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의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정부는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옥외광고시설의 안전조치에 대해 통지하고 있다. 기상국의 기상예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옥외광고시설, 간판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 설치자에게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촉구하며 시민들에게는 안전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대형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해당 시정부는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 중국 국무원 〈http://www.gov.cn/〉.

* 북경 시 정부 〈http://www.beijing.gov.cn/〉.

* 상해 시 정부 〈http://www.shanghai.gov.cn/〉.

* 광저우 시 정부 〈http://www.gz.gov.cn/〉.

* 계림 시 정부 〈http://www.guilin.gov.cn/〉.

* 계림생활망 〈http://news.guilinlife.com/〉.

* 바이두 〈https://www.baidu.com/〉.

공공안전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 투입

캐나다

Canada

캐나다는 옥외광고물의 설치와 관련해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공공안전의 보호를 매우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력 투입이 그 증거다. 본 보고서에서는 옥외광고물의 부적절한 설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기존 옥외광고물의 유지보수 실패에서 비롯되는 안전사고, 옥외광고물이 공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 세 가지 범주에서 캐나다의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안전관리체계를 들여다보았다.

* 글 _ **조현도** 해외통신원(NPR Research 연구원)

Ⅰ. 서론

옥외광고물은 기본적으로 사업홍보 등의 목적을 위한 '사유물'인 동시에, 건축물 외부에 노출되어 설치되는 특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 시민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과 도시 미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최근에는 '공공재화'의 한 종류로도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의 설치와 관리는 반드시 캐나다의 각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와 관리감독 하에서만 실행이 가능하고, 각 지방단체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허가와 관련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주기적인 태풍의 내습과 같은 풍수해의 가능성은 적은 국가지만, 지역별, 계절별로 기후특성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편이다. 특히 캐나다의 겨울은 눈, 얼음, 강풍으로 인해 옥외광고물의 물리적 파손과 그에 따른 재산과 인명피해를 야기한다.

그림 5 강풍으로 쓰러진 Phyl's의 옥외광고물 (2016년 3월, Lundy's Lane, Niagara Falls, ON)

※ 출처 : Feren Signs & Graphics, http://ferensigns.com/winter-sign-damage/

그림 6 새로 설치된 Phyl's의 옥외광고물 (2018년 7월)

※ 출처 : 현지 촬영장면

본 보고서에서는 캐나다 옥외광고물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안전과 관련한 지침들에 주목하여 관리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캐나다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체계

옥외광고물의 안전과 관련한 검토사항은 ① 옥외광고물의 설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② 기존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자체의 유지보수 실패에서 비롯되는 안전사고, ③ 설치된 광고물이 공공안전에 끼치는 영향 등 크게 세 가지의 범주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옥외광고물의 부적절한 설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각 지방정부의 옥외광고물의 설치에 관한 감독 사항의 하나로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예를 들어, 캐나다 마니토바 주 에드먼튼 시당국은 옥외광고물의 설치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인명사고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광고물의 설치허가 이외에도 실제로 옥외광고물의 물리적인 설치는 반드시 해당 구역의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일시적으로 봉쇄한 상태에서만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공사담당 기업은 시당국으로부터 'OSCAM(On-Street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허가서를 발급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림 7 OSCAM을 통한 다운타운의 옥외광고물 설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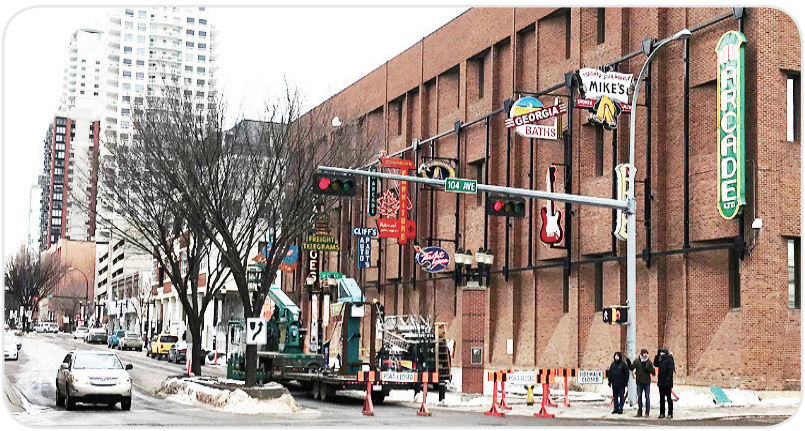

※ 출처 : Blanchett Neon, https://blanchettneon.com/tag/downtown-edmonton-signage/

그림 8 OSCAM을 통한 다운타운의 옥외광고물 설치모습 (반대 방향)

※ 출처 : Blanchett Neon, https://blanchettneon.com/tag/downtown-edmonton-signage/

그러나 '설치된 기존 옥외광고물의 유지보수 실패에서 비롯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의 부착고정방법에 대한 명문화된 별도의 규정은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주에게 광범위하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 주 Niagara Falls 시의 광고물의 설치와 관련한 조례 2008-224의 일반규정 4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광고판이 설치된 부지 소유주는 부지 내 광고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한 책임 부보 전제 하에 간판 설치에 필요한 면허를 획득하고 간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판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소유주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토론토나 밴쿠버 등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일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림 9 강풍으로 파손된 배너 광고(토론토, 2017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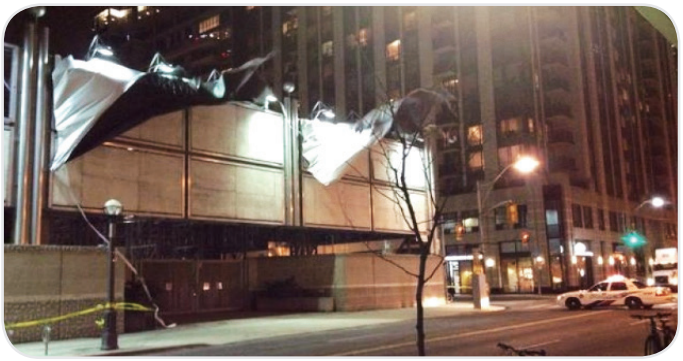

※ 출처 : CBC News, https://www.cbc.ca/news/canada/toronto/fierce-winds-no-joke-as-damage-mounts-in-toronto-1.2848504

그림 10 강풍으로 파손된 외부간판

※ 출처 : Simcoe Reformer, https://www.simcoereformer.ca/

한편,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공공안전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관리사항은 옥외광고물이 도로의 특정구간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명문화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온타리오 Niagara Falls 시의 경우 동일한 조례의 4조 1항에 따르면, 도로나 철도를 가로지르는 어떤 지점에서라도 차량의 흐름이나 보행자의 시선을 방해하는 위치의 간판 설치를 불허함[2]으로써, 무분별한 광고물의 설치로 인하여, 대중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동 조례의 4조 2항은 "별도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광고물도 울타리, 판자, 나무, 수송 대피소, 안전 가이드레일, 전봇대, 거리에 설치된 공공기물이나 휴지통에는 부착되거나 도색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광고판의 무분별한 설치가 공공기물의 기능을 제약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Ⅲ. 결론

앞에서 ① 옥외광고물의 부적절한 설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② 기존 설치된 옥외광고물 자체의 유지보수 실패에서 비롯되는 안전사고, ③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공공안전에 끼치는 영향 등의 세 가지 범주에서 캐나다의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난 '캐나다의 경관 개선 프로젝트 사례'프로젝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 정부와 사회는 옥외광고물의 설치과정에 있어 사적 재산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공재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캐나다 정부는 옥외광고물 설치 이후의 안전관리 규정에서도 사적 이익의 달성 못지않게 공공안전의 보호도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옥외광고물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행정력의 개입은 캐나다의 각 지방조례 등의 성문화된 법 규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향후 국내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① 옥외광고물 설치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항목 확대와 명문화, ② 발생가능한 안전상의 문제에 대한 책임주체의 명문화[3], 그리고 발생한 공공의 손해에 대하여 ③ 책임의 범위와 규모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국내의 관련 법안 개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된 개선사항들과 실질적인 행정력의 개입을 명문화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도로나 철도건널목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보행자 또는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도로, 차선, 고속도로, 철도건널목 주변에 설치되어 교통신호를 가리는 곳에는 어떠한 광고물도 설치될 수 없다."

3) 캐나다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건물 내지 토지의 소유주가 1차적인 관리책임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주체로 인정되고 있다.

참고문헌

* City of Niagara Falls, “Sign Bylaw 2008-224”, <https://niagarafalls.ca/pdf/planning/applications/application-sign-by-law-amendment.pdf>.

* City of Edmonton, “Edmonton Zoning Bylaw 12800”, <https://webdocs.edmonton.ca/zoningbylaw/ZoningBylaw/Part1/Development/59__Sign_Regulations.htm>.

* City of Toronto, “CHAPTER 694, SIGNS, GENERAL”, <https://www.toronto.ca/legdocs/municode/1184_694.pdf>.

* City of Vancouver“Sign Bylaw”, <https://vancouver.ca/your-government/sign-bylaw.aspx>.

지자체와 공권력의 합리적인 배치로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프랑스

France

옥외광고물 관련 프랑스의 안전 대책은 크게 지자체의 사전관리와 경찰의 사후관리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지자체는 옥외광고물이 적법하게 설치 및 관리되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사고 조사는 경찰이 맡는다. 물론 경찰은 공공장소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목 아래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문제가 있을 경우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지자체와 공권력의 합리적인 배치로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한다.

* 글 _ **최현아** 부산일보 해외통신원

Ⅰ. 서론

프랑스 정부는 옥외광고에 대한 관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옥외광고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홍보 수단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도한 옥외광고는 도시의 환경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규정을 통해 옥외광고 규격, 설치에 대한 허가 등 적법한 과정을 통해 도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물론 옥외광고의 규격이나 설치상의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관리 부실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비를 동반하지 않는 거센 바람이 도심을 휩쓸면서 나무가 쓰러지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한 바 있 있다. 지난 2016년 3월 파리 16구에서 강한 바람으로 쓰러진 대형 간판이 행인 두 사람을 덮친 사고가 발생했다. 규격 4m×3m의 광고판이 쓰러지자 안전관리 회사인 록삼(Loxam)과 인비보(InVivo)에서 위급상황을 알렸다. 곧 4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광고

판을 들어 올리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우여곡절 끝에 두 명의 사고자들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두 명의 사고자 중 젊은 여성은 의식을 잃었고 그의 남자 친구 역시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 갔다. 이 옥외광고판의 제작자는 엑스테리옹 미디어(Exterion Media)로 프랑스 철도청인 RATP의 공사판의 울타리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했다. 사고가 나자 엑스테리옹 미디어는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경찰 역시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이 사고 직후 파리시의 이달고 시장은 옥외광고 회사들에게 옥외광고물 설치 시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프랑스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규정 및 관리 주체에 대해 살펴보고, 사전에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Ⅱ. 옥외광고물 설치, 관리 주체 및 안전 대책

1. 옥외광고 관리 규정

프랑스의 옥외광고에 관한 기본 정책은 거의 30년 동안 광고, 간판, 유도 간판에 대한 1979년 12월 29일 법에 따랐다. 그 후 2010년 7월 12일 환경법(Grenelle 2 ,La loi n° 2010-788 du 12 juillet 2010)에 의거하고, 2012년 1월 30일 법령에 따라 옥외 광고에 대한 규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이에 관한 내용은 프랑스 환경에너지부(Ministère de l'Ecologie du développment durable et de l'Energie) 산하에서 발행한 가이드인 '옥외광고 규정(La réglementation de la publicité extérieure)'에 정리되어 있다. 이 가이드를 보면 옥외광고에 대한 정의, 설치 규정, 금지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가이드는 전국적인 옥외광고에 대한 규정인데 지방의 경우 지역 가이드인 지역 옥외광고 규정(Reglement local de publicite, 이하 RLP)이 있다. 프랑스는 옥외광고 규정이 중앙과 지방으로 나뉘어 있지만 중앙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자체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옥외광고 규정을 정리한 가이드를 보면 옥외광고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옥외광고 설치 시 옥외광고 가이드에 따라 적절한 장소에 규격에 맞춘 광고를 제대로 설치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허가권을 부여하지만 광고판 설치 이후 사후관리 즉 안전과 관련된 지침은 없다. 그 이유는 공공장소에 부착한 옥외광고에 대한 사후관리 주

체는 경찰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나 도로변에 설치하는 옥외광고에 대한 규정은 도로법에 따라 허가 및 금지하고 있다.

2. 옥외광고 관리 주체

2010년 7월 12일 개정된 환경법은 환경보호라는 관점에서 시각적인 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옥외광고 관리에 대한 내용을 36조에서 50조까지 담고 있다. 2012년 1월 31일 개정된 전국적인 옥외광고 법령은 지역자치단체의 코뮌 지역(communal)과 인터코뮌(intercommunal)지역에서의 옥외광고 관리 주체를 담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 옥외광고 규정(RLP)에 따를 경우는 시장과 시가 관리 주체가 되지만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시, 면, 읍의 경우 도의 경찰청이 관리 주체가 된다(환경법의 581-14-2조, l'article L. 581-14-2 du code de l'environnement). 즉 코뮌이 지역 옥외광고 규정(RLP)를 포함하는 경우 경찰은 시의 명령에 따라 옥외광고를 관리하게 된다. 반면 인터코뮌 가운데 지역 옥외광고 규정(RLP)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경찰청이 관리하게 된다. 만일 시청에서 지역 옥외광고 규정(RLP)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경찰청에 알리고 옥외광고 예외 규정 등과 같은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 고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환경법 개정에 따른 지역과 전국의 옥외광고 규정 가이드가 설립되면서 옥외광고 관리 주체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역할 배분이 이루어진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전까지만 해도 시와 도 경찰청이 옥외광고 관리를 동시에 진행해 혼선을 빚는 경우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3. 옥외광고물 안전 관리

환경법 R581-21(Le code de l'environnement R581-21)조에 의하면 옥외광고물 설치 이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옥외광고물의 상태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R581-56)에 지적하고 있다. 만일 옥외광고물이 이 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청은 15일 이내로 옥외광고물의 설

치를 해체할 수 있다. 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옥외광고물일 경우 매일 일정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그리고 공공장소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시, 읍, 면의 경찰이 업무를 맡게 된다. 이때 공권력은 나무나 옥외광고물이 쓰러지거나 바람에 날려가는 사고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도로상의 안전을 위한 옥외광고물 규정

프랑스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 운행 안전을 위해 도로변 근처에 모든 광고, 간판, 유도 간판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주거지역, 고속도로 위의 휴게소, 주유소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일반 간판이나 유도 간판이 도로 표지판의 가독성을 떨어뜨리지 않거나 도로 운행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도로상의 옥외광고와 관련해 유도 간판의 경우 예외 조항이 있다. 유도 간판이란 특정한 활동이 이뤄지는, 인접 건물을 가리키는 도형이나 이미지를 말한다. 직접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물 위에 부착하는 간판과 달리 유도 간판은 활동이 이루지는 건물 인근에 설치되는 간판이다. 유도 간판의 광고 내용은 문화, 관광, 부동산 분양, 건설, 리모델링 등의 활동을 지시하는 간판이다. 원칙적으로 행사나 인근 지역을 알리는 유도 간판이 도로 표지판 위에 설치되는 것은 금지다. 반면 지역 행사나 축제 등 일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유도 간판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한다. 이때 설치 장소는 비거주지역 또는 만 명 이하의 주민이 사는 코뮌 안에서 가능하다. 설치 기간은 행사 전 3주 동안이며 철거는 행사 1주 후에 시행된다. 규격의 경우 높이는 1미터, 가로 길이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해선 안 된다. 단 나무 위나 전깃줄, 전횃줄, 공공조명 위, 도로 운행과 관련된 기구 등에 설치해선 안 된다. 만일 옥외광고판이 안전과 관리에 문제가 될 경우 즉시 철거를 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프랑스 옥외광고 안전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프랑스 옥외광고 규정에서는 옥외광고 설치 규격이나 허용 장소, 방식, 허가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옥외광고 설치 후 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고 있지 않다. 만일 파리에서처럼 옥외광고물이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해 무너져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이에 대한 관리 주체는 지역 옥외광고 규정(RLP)을 가질 경우 시나 읍, 면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경찰은 지자체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안전관리 등을 하게 된다. 따라서 파리에서의 옥외광고물 붕괴 사고는 먼저 파리 시가 옥외광고물이 적법하게 설치, 관리되었는지를 점검하게 되고 사고 조사를 경찰이 맡게 되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공공장소의 안전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문제가 있을 경우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같은 관리시스템의 단순화는 지자체와 경찰이 옥외광고물을 이중적으로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막을 수 있고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사전관리와 경찰의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공권력의 합리적인 배치로 눈길을 끈다.

참고문헌

* Entretien des panneaux publicitaires , <http://www.lagazettedescommunes.com/36586/entretien-des-panneaux-publicitaires/>.

* Le parisien(2016. 02.08) Vent à Paris : un couple grièvement blessé par un panneau publicitaire, <http://www.leparisien.fr/paris-75/paris-75016/coup-de-vent-a-paris-la-chute-d-un-panneau-publicitaire-fait-deux-blesses-grave-08-02-2016-5526455.php>.